

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[별표 2]

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(제13조제7항 관련)

1.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

산사태취약지역 안내	
이 지역은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.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○ 위치: OO군 OO면 OO리 00번지(도로명 주소) ○ 지정일: 0000. 00. 00. ○ 대피소: OO군 OO면 OO리 00번지(OO마을회관)(도로명 주소) *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79조 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	위치도
문의: 000시청(T. 000-000-0000) 000시장(군수 · 구청장 · 지방산림청장)	

2. 표지판 제작 방법

가. 규격

- 1) 표지판: 1.1미터(가로) × 0.9미터(세로)
- 2) 기둥: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.5미터 이상
- 나. 재질: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
- 다. 색상: 아래 구분과 같이 하되,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

- 1) 표지판 바탕: 어두운 노란색
- 2) 글씨: 검정색으로 하되,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.
- 3) 기둥: 노란색

3. 설치 방법: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것